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61호 2022. 9. 23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2-118호 주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----- 1
- 남원시 도시관리계획(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----- 9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2 - 118호

주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3일

남 원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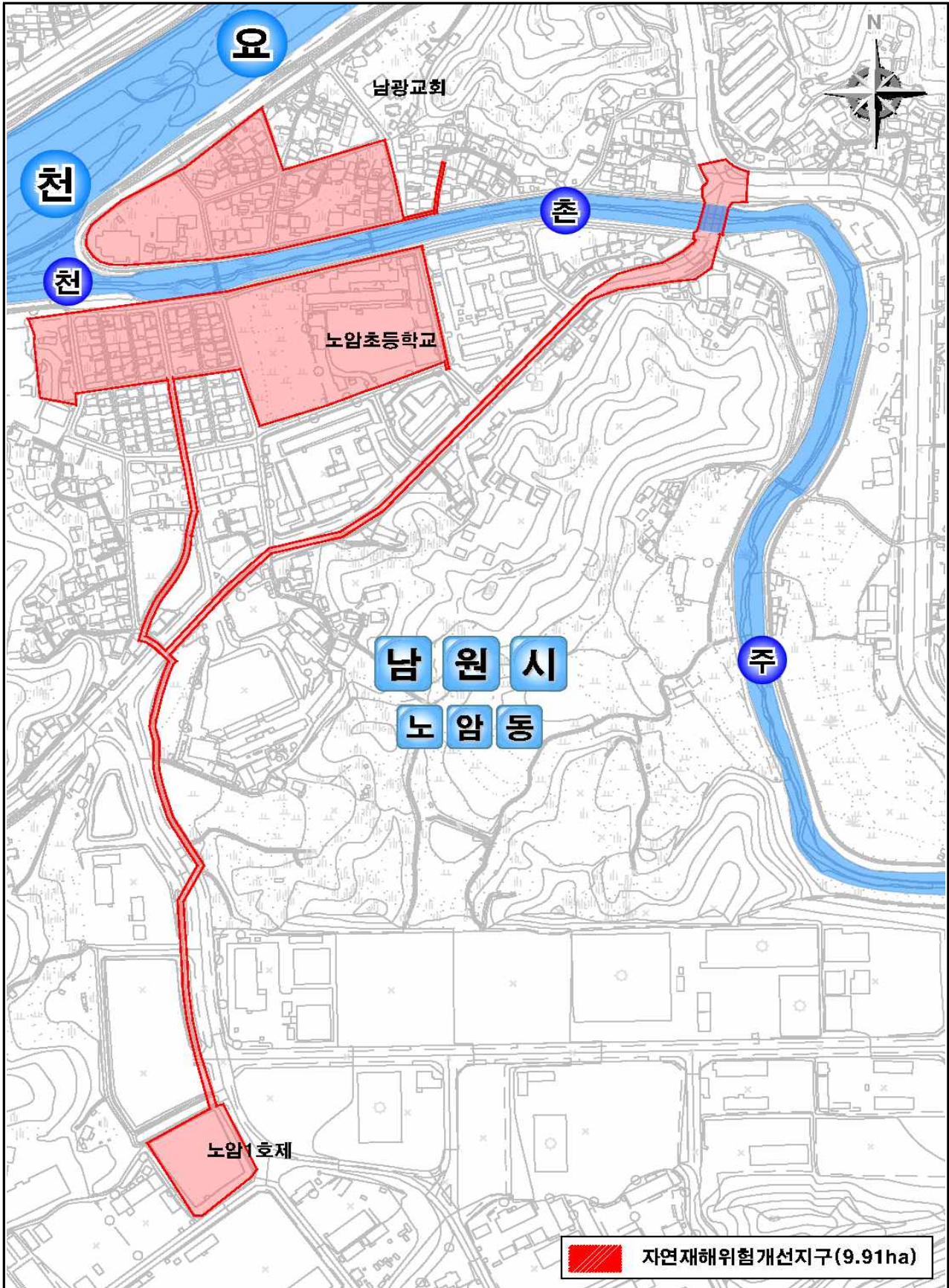
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

지구명	위 치	지정개요			지 정 사 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ha)		
주촌지구	남원시 노암동 807-86번지 일원	침수위험 지구	나	9.91	· 요천 및 주촌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수위 상승시 내수배제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	

2. 기 간 :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

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

▣ 주촌지구





주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안)



2022.

 남 원 시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예정) 현황

사업개요

- 지구 명 : 주촌지구 (피해예상면적 10.78ha)
- 위 치 : 남원시 노암동 일원
- 지정개요 : 유형 - 침수위험지구, 등급 - "나" 등급, 지정면적 - 9.91ha

지정목적

- 남원시 관내 상습 침수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내재된 주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.



<위치도>

남원시 노암동 배수체계 현황



침수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

일시	관측강우량(mm) 일최대강우량	피해개요		조치사항
		원인	내용	
2018.08.08.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관거 통수능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로내 침수 및 토사 유출 상가 침수 발생 	용급복구
2020.08.07. ~08.09.	363.9mm (500년빈도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촌천 수위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량 관거 통수능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옥 99동 농경지 침수 2.5ha 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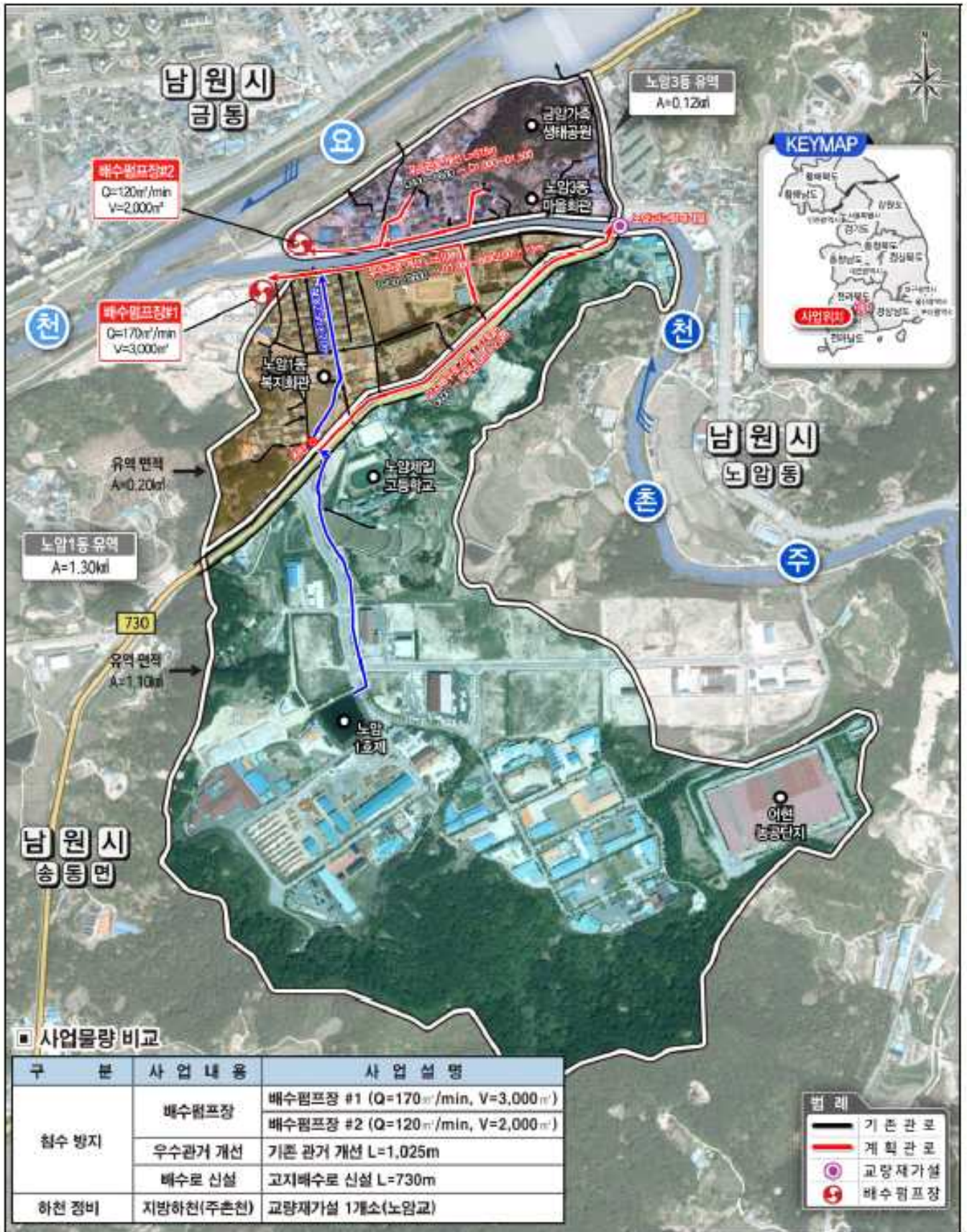
[요천 및 주촌천 수위상승, 2020.08.07.~09.]



[노암교 인근, 2020.08.07.~09.]



주촌지구 사업계획도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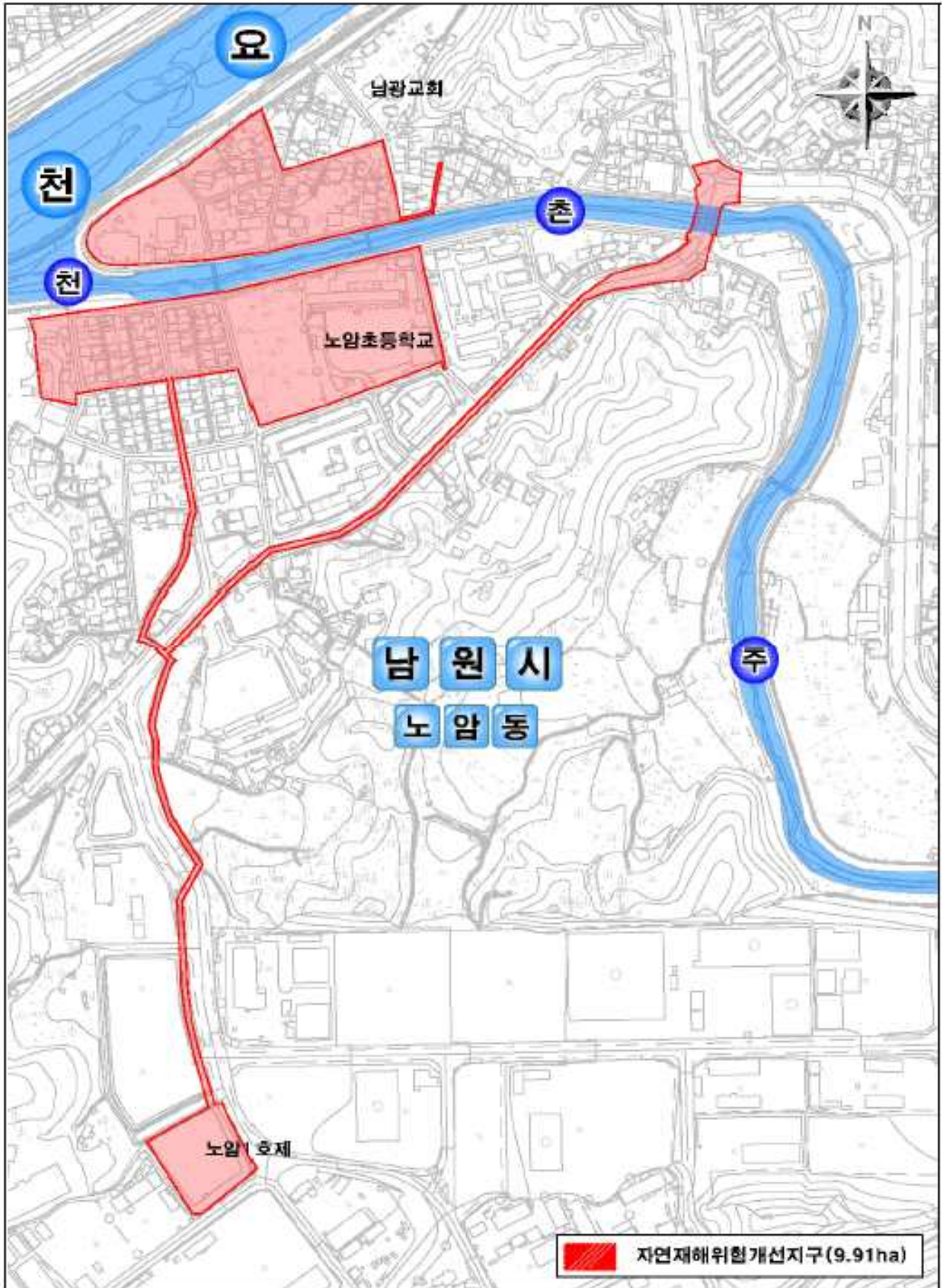


사업물량 비교

구 분	사 업 내 용	사 업 설 명
침수 방지	배수펌프장	배수펌프장 #1 (Q=170 ^{m³} /min, V=3,000 ^{m³}) 배수펌프장 #2 (Q=120 ^{m³} /min, V=2,000 ^{m³})
	우수관거 개선	기존 관거 개선 L=1,025m
	배수로 신설	고지배수로 신설 L=730m
하천 정비	지방하천(주촌천)	교량제가설 1개소(노암교)

법 레	
	기 본 관 로
	계 획 관 로
	교 량 제 가 설
	배 수 펌 프 장

주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안)



남원시 고시 제2022-119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이백면 강기리 150-1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결정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9월 23일

남 원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면적(m ²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35,987	-	35,987	100.0	
계획관리지역	35,987	감)121	35,866	99.7	
보전관리지역	-	증)121	121	0.3	

※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,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증감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임.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3	지구단위계획구역 (아스콘)	이백면 강기리 150-1번지 일원	35,987	-	35,987	협회의제 지계 58000-2044 (1998.7.18)	

※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변경은 없으며 기 운영 중인 공장에 맞춰 선형 변경코자 함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사유
변경	13	지구단위계획구역(아스콘)	· 구역변경	·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장계획 수립을 통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공간시설(녹지)(비도시계획시설) : 변경

○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녹지	경관녹지	이백면 강거리 146-2번지 일원	-	증)2,564	2,564	-	

○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녹지	· 신설 · A = 2,564㎡	· 주변지역과 사업부지의 차폐성을 강화하고 대기오염, 안전사고, 자연재해 등을 위한 경관녹지 설치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 번호	획 지		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	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35,987	-	이백면 강거리 150-1번지 일원	35,987	-	35,987	
1BL	35,987	1-1	이백면 강거리 150-1번지 일원	35,987	감)2,564	33,423	공업용지
		1-2	이백면 강거리 146-2번지 일원	-	증)2,564	2,564	녹지용지

○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1-1	- 35,987㎡ → 33,423㎡ (감 2,564㎡)	-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녹지용지 확보에 따른 공업용지 감소
1-2	- 신설(A = 2,564㎡)	- 주변지역과 사업부지의 상충성을 완화하고 대기오염, 안전사고,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용지 신규 설치

다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**변경**

가구 번호	위 치		구분	계획내용	비고	
	기정	변경				
1BL	1-1	1-1 1-2	용도	지정	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	
				불허	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중 C10~C15, C19~C20, C22, C24~C25, C29~C31, C33~C34	
			건폐율	40% 이하		
			용적률	100% 이하		
			높 이	4층 이하		
			배 치	-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배치		
			형 태	- 기능에 적합한 조형적 형태 권장		
			색 채	- 주조색 :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 - 부채색 :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		

☑ 불허용도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표)

대분류		중분류			
코드	항목명	코드	항목명	코드	항목명
C	제조업	10	- 식료품 제조업	22	-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		11	- 음료 제조업	24	- 1차 금속 제조업
		12	- 담배제조업	25	-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
		13	- 섬유제품 제조업 : 의복제외	29	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		14	-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30	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		15	-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31	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		19	-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33	- 기타 제품 제조업
		20	-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	34	-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